

「구미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이상호 의원 외 16인

2. 제안이유

- 「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구미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양봉산업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-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(안 제4조~제5조)
- 양봉산업육성 지원 위원회(안 제6조~제9조)
- 연구개발사업, 밀원식물 조성, 전문인력 양성 등(안 제10조~제12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제5조, 제7조, 제9조, 제10조, 제12조
- 「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¹⁾에 따라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고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으로,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밀원식물²⁾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책무사항을 규정하여, 벌꿀의 생산뿐 아니라 생태계의 유지·보전에 기여하는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

1)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·보급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- 2) **밀원식물**: 꿀벌이 꽃꿀,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로, 꿀벌이 자라나는데 필요한 화밀을 분비하고 화분을 공급하여 벌꿀의 원천이 되는 식물

-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, 5년마다 지원계획의 수립으로 양봉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토대 마련과 양봉 분야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으로, 지역적 여건에 맞는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-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구미시 양봉산업 육성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, 시의원·양봉단체·전문가 등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양봉산업 육성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※ 별표 (참고자료)

○ 구미시 양봉농가 현황(2024. 2. 기준)*

구분	농가수(호)	꿀벌 사육 봉군수
토종	10	735
서양종	249	34,677
혼합	5	583
계	264	35,995

* 출처: 구미시청 축산과 양봉등록내역 대장

○ 양봉 지원사업 현황(2023년도 사업내역)

구 분	사업 건(수)	사 업 비(천원)				
		계	국비	도비	시비	자부담
계	12	918,396	143,292	95,177	303,434	376,493
생산성 향상 (양봉 기자재 지원 등)	9	574,400	-	57,780	234,820	281,800
방역·방제지원	3	343,996	143,292	37,397	68,614	94,693

* 출처: 구미시청 축산과